吏讀字 '內'의 讀法

朴盛鍾*

요 약

借字表記字 '內'의 독법에 관해서는 音借字로 본 견해, 訓借字로 본 견해, 그리고 添記的 요소 또는 指定文字로 본 견해 등이 있으나 아직 定說로 인정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의 대강을 훑어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본고는 이를 위해 먼저 麗末鮮初의 이두문에 사용된 '內'의 용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讀字로 쓰인 것은 제외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한 용법은 養蚕經驗撮要와 農書輯要의 이두문에서 문종결 위치에 쓰인 '使內', 그리고 准戶口의 첫머리에 기재된 문장 끝에 붙는 '爲內敎' 중의 '爲內', 그리고 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1392년)에 쓰인 '喫持是內敎' 중의 '-是內' 용법이며, '望良白內臥乎事' 중의 '望良白內'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모두 문종결의 위치에 사용되었는데, 이 용법은 매우 이른 시기로부터 존속되어 온 것으로서 명사문의 존재를 시사해 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경우의 '內'는 확인법 선어말어미와 유사한 형태소와 동명사 어미 '-ㄴ'이 통합된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보았다. 최근에 발굴 소개된 月城垓字木簡 제149호에 적힌 문구 맨 마지막의 '使內'는 이러한 가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麗末鮮初 시기

* 關東大學校 미디어문학과

와 7세기 이전의 이두에 사용된 借字 '內'는 '안' 정도로 읽히는 訓假字로 규명하였다.

麗末鮮初의 이두문에 사용된 '內'의 또 다른 용법들에 관해서도 살펴 보았다. 이 중 '爲白內等'은 당시의 언어를 반영하는 표현으로서 후대에 이어져 갔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의 '內' 역시 '안'으로 읽히는 訓假字다.

본고에서의 논지가 신라와 고려 시대의 이두 자료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지, 그리고 시기별로 용법상의 차이나 독법 및 문법적 기능의 변천이 있었는지의 문제는 後稿로 미루었다.

*핵심어: 吏讀字 '內', 使內, 爲內, -是內, 養蠶經驗撮要, 農書輯要, 동명사 어미 '-ㄴ'

1. 머리말

漢字를 빌려 우리말을 적은 表記字들의 讀法과 표기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문법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에 의해 상당수 밝혀졌다. 우리말 표기를 위해 적힌 漢字들 중에는 韓國漢字音에 의거하여 音으로 읽거나 해당 한자를 우리말로 새겨 읽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른바 末音添記法이라 하여 우리말 단어의 末音節 또는 末音에 해당하는 한자를 덧붙여 표기하는 방식도 병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借字表記字들 중에 아직도 그 독법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적잖은데, 차자표기에 쓰인 '內'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借字表記字 '內'의 독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가설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견해들 각각이 借字表記字 '內'의 독음과 문법적 기능을 충분히 명쾌하게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표기의 영역 및 기록물의 특성을 구별하지 않고 일관된 독법을 제시하려 한 데에서 일단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문장표기와 어휘표기에 쓰인 것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독법으로 읽고 해석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무리한 결론에 이른 것이라 할 만하다. 이것은 크든 작든 이른바 '一字一音의 原理'를 固守하고자 한 데에서 비롯한 면이 있다. 이 원리는 매우 유효하고 타당한 원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말 문장을 적는 과정에서 문법 형태를 표기한 용례들과 그렇지 않은 용례들 즉, 고유명사 또는 物名을 적는 과정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함께 묶어 어느 한 가지 독법으로 설명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례들이 쓰인 시기를 일정하게 제한하지 않고 동일한 독법으로 일관한 데에서 무리한 결론에 이른 면이 있다. 말하자면, 천년이 넘은 오랜 시간적 차이를 지닌 두 용례를 어느 하나의 독법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앞서 말한 '一字一音의 原理'라 하더라도 특정한 시기에 국한하여 적용할 성질의 것이지, 그것을 마치 傳家寶刀와 같이 모든 시기의 모든 용례들에 일관되게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音借字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音借字의 경우엔 中國의 漢語音은 물론이고 韓國音의 변화를 적극 고려하여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內'의 독법에 관한 연구물 중에는 한자음의 변천에 유의하면서 독법을 제시한 것들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1] 한자음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대상 借字表記字의 용례 중 한자음 변화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의 것들을 구별하여 그 독법을 추정하여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자를 訓借한 경우에는 訓 자체의 변천 또는 改新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변화 이전과 이후로 그 시기를 나누어 보아야 할

1) 대표적인 예로서 이강로(1989ㄱ, ㄴ)와 金武林(2003)을 들 수 있다. 전자는 '內'의 고대 대표음을 '예'로 보았다. 그리고 후자는 고대 음가를 '*nu'로 재구하고 후대의 한국한자음 '니'는 새로운 음가에 의한 교체로 파악하였다.

것이다. 따라서, 한자의 音과 訓 어느 쪽이든 변화가 확실한 경우 그에 따라 音借字와 訓借字는 그 용례들을 나누어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위의 두 가지 문제점에 유념하여 麗末鮮初 시기의 吏讀에 쓰인 '內'의 한 독법을 제시하는 일을 주안점으로 삼고, 이러한 독법이 어느 시기에까지 소급될 수 있을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2節에서는 '內'의 독법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 중 대표적인 예들을 정리 및 검토하고, 3節에서는 麗末鮮初 시기의 吏讀에 쓰인 '內'의 여러 용법들에 관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독법과 관련하여 기술한 다음, 4節에서는 앞서 살펴본 독법 중 訓借字의 용법이 어느 시기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를 개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借字表記字 '內'의 독법에 관해서는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內'를 音借字로 보는 견해가 그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訓借字로 다루려는 견해가 있다. 그런가 하면 '內'를 指定文字로 보아 그 앞에 선행하는 한자를 訓讀하라는 표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각각의 견해에 대하여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인 몇 예들을 소개하면서 그 타당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가늠해 보기로 한다.

2.1. 音借字로 본 견해

우리말 차자표기에 쓰인 '內'를 音借字로 본 견해는 비교적 일찍부터 등장하여 이어져 왔다. 이것은 다시 그 독법에 따라 대체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한자 본래의 의미와는 상관 없이 '假의 원리'로 사용된 音假字로 보는 점은 거의 동일하다.

音借字로 본 이른 견해 중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白鳥庫吉(1901)을 들 수 있다. 白鳥庫吉(1901: 25)은 신라의 시조 赫居世의 異表記인 弗矩內를 한국한자음에 따라 pulkunai로 읽었다. 內를 nai로 읽은 것은 일반적으로 전래하는 한자음인 '닉'[2]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가 차자표기에 쓰인 內를 모두 음차자로 보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하기 어렵다. 이른 시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借字表記字 '內'를 전래 한자음에 따라 '닉' 또는 그와 유사한 음으로 읽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同音異表記인 赫居世와 弗矩內의 경우만 하더라도 '世 = 內'의 관계에서 世는 우리말로 새겨 읽고 內는 음으로 읽는 자임을 쉽게 상정할 수 있는데, 양자가 동일한 음상을 지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점은 거의 2000년이나 시간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內의 音價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른 시기의 차자표기에 쓰인 內의 독음을 한글 표기 문헌에서의 '닉'와 달리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內의 음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독법을 제시한 견해가 주목된다. 內의 古代 한국한자음에 대한 再構는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鮎貝房之進(1931: 17ㅎ)은 內의 古音을 누(nū)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內는 惱·奴·弩 등과 마찬가지로 지명 표기에서 壤의 異表記字로 쓰인다고 보았다. 이것은 壤이 '누' 또는 '노'의 訓으로 읽히기 때문에, 訓借字인 壤을 대신하여 音借字 內·惱·奴·弩 등이 쓰인다고 본 것이다.

2) 內의 음을 '내'로 표기한 것은 『新字典』(1권 12ㅈ, 1915년)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내'와 함께 전래 한자음 '닉'를 병기한 점이 특징인데, 이것은 음가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표기법이 달라져 'ㅅ'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자 內는 納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므로, 또 다른 음 '납'으로도 읽히는 것이 조선조의 문헌 및 자전에서 확인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鮎貝房之進은 더 나아가 內·惱·腦·弩·儒가 서로 혼용되는 예들을 통해 후대의 한자음 '뇌'도 입증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술할 바와 같이 內가 훈차자로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金武林(2003)이다. 이 논문에서는 內의 고대 음가를 中古 前期 漢語音을 감안하되 圓脣性을 중시하고 韻尾를 탈락시킨 *nu로 재구하였으며, 鮎貝房之進과는 달리 조선 한자음 '뇌'는 이것의 내부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가에 의한 교체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교체의 시기는 대체로 10세기 초반 이전으로 본 듯하다. 왜냐하면, 均如의 향가와 10세기 전반의 이두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10세기 초반은 '內'가 '臥'로 교체되어 가는 과정의 막바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金武林 2003: 139)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臥'는 고려 시대 이후의 이두에서 사용되었고, 구결에서는 省劃하여 'ㅏ'로 사용되었다. 석독구결에서의 'ㅏ'는 訓借字로서 '누'로 읽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音借字 內의 고대 음가가 *nu였음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차자표기에서 用字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하겠다. 內의 고대 음가를 *nu로 재구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이두에 쓰인 內는 이것으로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內를 음차자로 보되, 앞선 논의와는 전혀 다르게 그 음가를 상정한 경우도 있다. 이강로(1989ㄱ, 1989ㄴ, 1990, 1991)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內'의 本音이자 上古音을 '예'로 보고, 이것이 우리말 차자표기 과정에서 어말어미에서는 '-야', 접미사로서는 '-이' 등의 표기에도 원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향가 祭亡妹歌 등에 쓰인 '於內秋察' 중의 '於內'는 '어이', 이두에서의 '使內'는 '브리이'와 같이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內의 고대 한자음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借字에 대하여 일관된 독법으로 해결하

고자 함으로써 一字一音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特長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표음과 그 轉用音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만 아니라, 이두·향찰·고유명사 표기 및 物名 표기 등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용례들 사이의 시대차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무리한 결론에 이른 듯하다. 말하자면 머리말에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內를 음차자로 보되, 本音 또는 대표음을 설정하지 않고 우리말 문법형태의 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 음가를 추정한 견해도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에게 비교적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온 견해라 할 만한데, 문법사의 관점에서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문법형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이전 시기의 차자표기에 투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梁柱東(1946: 313-315)은 '內'의 古音은 '닉, 뇌'인데 향가에서는 音借 'ᄂᆞ' 표기에 쓰인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음 '닉' → 전용음 'ᄂᆞ'로의 추정은 그 개연성이 매우 높아 설득력을 지닌 견해이다. 그러나 대표음 '닉'의 想定 자체가 훨씬 뒤의 조선조 한글 문헌에서의 한자음에 기댄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그 사이에 漢語音의 변천이나 韓國漢字音의 내부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견해로서 근본적으로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위 견해는 크든 적든 많은 논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이른 시기의 문장을 적은 차자표기 자료들에 사용된 '內'의 독법과 그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고려시대의 석독구결 자료들을 면밀히 고찰한 연구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 대표적인 연구물로서 박진호(1998)와 정재영(2000)을 예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비록 그 분포 및 기능 면에서는 중세국어의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ᄂᆞ-'와 다를지언정, 고대국어[3]에도

3) 이 논문들에서의 고대국어는 시기 설정이 그 동안 정설로 거의 받아들여지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韓系 중앙어의 중심지인 경주에서

형태소 '-ᄂᆞ-'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석독구결에서 이 형태소의 대응 표기자 '-ㅌ-'(飛)와 '-ㅏ-'(臥) 중에서 후자가 중세국어의 '-ᄂᆞ-'에 더 가깝다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 신라 및 고려 초기의 이두와 향가에 적힌 '-內-'는 이 문법형태소를 반영한 표기로서 'ᄂᆞ'로 읽힌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문법 형태의 차자표기자 內·飛·臥를 문법사라는 동일선상에 놓고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이두에 쓰인 內를 'ᄂᆞ'로 모두 동일하게 읽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2.2. 訓借字로 본 견해

지금까지 논의한 견해들과는 달리 차자표기자 內를 訓借字로 본 견해들이 있다. 이것은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며, 신라의 金石文 중의 이두문에 사용된 용례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찍이 金澤庄三郎(1918: 92-93)은 對馬島无盡寺鐘銘(745년) 중의 '…敎受內成記時…'를 '受けし記を成す時'(받아 기록을 이룬 때)로 풀이하였는데, 이 경우 '內'는 그 訓인 '안'으로 읽을 수 있으며 동사의 활용형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內'가 원래는 훈차자로서 '안'으로 읽혔을 것이라는 견해는 그 후 小倉進平(1929: 39-40)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다만, 小倉進平의 경우엔 처음에 관형형으로 사용되던 것이 말음 '-ㄴ'을 생략하여 부사형으로도 쓰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 對馬島无盡寺鐘銘(745년) 중의 '…受內…'를 '바더'로 읽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중부 지방의 개성으로 중심지를 옮긴 10세기 초 즉, 대체로 고려가 건국한 시기부터 중세국어라 하고 그 이전의 삼국 시대의 우리말을 대체로 고대국어라 하는 것이 정설이었다. 이와 달리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국어는 대체로 13세기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 이두문에 쓰인 차자표기자 內를 훈차자로 또렷하게 자리매김한 연구물로서는 鮎貝房之進(1931: 18-20)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內는 훈차자로서 '안'으로 읽히며, 현대어의 '-은, -는'에 해당하는 고대어의 동사 '分詞格'인 '-안, -난'의 표기에 두루 쓰였다고 밝혔다. 그 용례로서는 對馬島无盡寺鐘銘(745년)과 菁州蓮池寺鐘銘(833년) 및 咸通六年禁口銘文(865년)을 제시하였는데, 문법적 기능은 대체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형으로 보고 있다. 鮎貝房之進은 더 나아가 이두토 望良白內臥乎事를 비롯하여 지명 표기 南內縣, 그리고 인명 표기 弗矩內에서의 內 또한 훈차자라고 하면서, 弗矩內는 '붉안(pūlkan)'으로 읽힌다고까지 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지명 표기에 쓰인 內는 음차자로, 이두문에 나타나는 內는 훈차자로 분리하여 파악한 점은 매우 주목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內를 훈차자로 본 견해들은 漢字 '內'의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假의 원리에 의한 用字로 보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간혹 讀의 원리에 따른 훈차자로서의 內를 규명한 견해도 있다. 이강로(1991)에서는 일반적으로 音假字로서 '예'를 나타내는 '內'가 '郡內, 座內, 任內, 貼內, 文字內' 등과 같은 명사류 뒤에서는 '않/안'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부언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訓假字가 아니라 訓讀字로 쓰였음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 경우엔 '郡內, 任內'와 같이 漢字語로 굳혀져 사용된 것이 들어있어 內를 새겨 읽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0-11쪽).

한편, 李丞宰(1992ㄱ: 164)는 令內弥(華嚴經寫經造成記 755년)와 爲內弥(淨兜寺形止記 1031년)의 용례 및 成內飛也(簽興寺鐘銘 856년)의 용례를 제시하면서 이 경우의 內는 '-ᄂᆞ-' 또는 '-오/은-'으로 읽을 수 없고, '內'가 '안' 이외에 '솝'의 뜻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동사 어간 뒤에 쓰인 경우는 '-숩-'에 대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3. 添記的 요소 또는 指定文字로 본 견해

향가나 이른 시기의 이두문을 들여다 보노라면 '內'에 아무런 문맥적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만한 문법적 기능 역시 없어 보이는 예들이 적잖다. 한마디로 군더더기라고나 할 만한 예들이다. 小倉進平(1929: 38-40)은 균여 향가 禮敬諸佛歌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拜內乎隱'을 '빌으온'으로 읽었는데, 이 중 內를 생략하여 '拜乎隱'으로 표기하여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이두 동사 '使內-'에서의 용례에서도 마찬가지라 하였다(386-389). 이러한 현상에 대해 小倉進平은 훈차자 '內'는 본래 '안'으로 읽히며 관형형으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말음 '-ㄴ'을 생략하여 부사형으로도 쓰였는데, 더 나아가 별다른 의미 없이 동사 어간 뒤에 첨기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39-40, 322-324).

이러한 관점은 그 후 徐鍾學(1995: 174-178)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어, '內'는 '先行하는 借字를 訓讀하라고 지시하는' 指定文字로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使內, 爲內, 是內, 白內'의 경우 선행하는 한자를 우리말로 새겨 읽고, 內는 읽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어떤 表記字이든 일정한 형태 또는 음상을 드러내기 위해 채용된다는 사실과, 단순히 지시 또는 부호로서 사용한다면 굳이 '內'와 같은 正字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 그리고 3節에서 보듯 反例가 도처에서 발견되는 사실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3. 麗末鮮初 시기의 吏讀字 '內'의 讀法

3.1. 讀字로 사용된 '內'

이른 시기의 문장 표기에 사용된 借字 '內'에 관하여 마치 실타래같

이 꼬인 듯한 迷宮을 일단 피하기 위해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진 麗末鮮初 즉, 1400년을 전후한 시기의 자료들을 먼저 들여다 보기로 한다. 그리고 고유명사와 物名 등 어휘 표기에 쓰인 것은 본 논의에서 제외하고 이두에서의 용례만을 주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ㄱ. 右 啓矣段道內興安府任內仁同縣人今音尙田乙…… <1385년 張戩所志 2> (이에 啓를 올리노니, 저의 경우엔 道內 興安府 任內 仁同縣 사람 今音尙의 토지를 ……)[4]

ㄴ. 洪武貳拾伍年月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貳拾伍年八月…… <1392년 李和錄券 5-6> (洪武 25年(1392년) 某月 某日字 시행의 都評議使司의 出納 안의 내용인즉, "洪武 25年 8月 ……)

(2) 後次別爲所有去等此文字內乙用良告官辨正爲乎事 <1447년 琴碧別給文記 6-7> (후에 특별한 바가 있거든 이 文書의 내용으로써 官에 告하여 바로잡을 일.)

예문 (1)의 內는 모두 한자 본래의 의미를 지닌 채 사용된 讀字이다. (1ㄱ)의 內는 단순히 '안'의 뜻만 가진다. 그러나 (1ㄴ)에서는 '안에 담긴 내용'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관아의 公文書에서는 시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예가 보편적이다. (1ㄴ)에서의 出納 내용은 같은 문서의 48행 '王旨內事意乙用良啓使內乎向事出納是置有亦'에서 '…向事'까지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

(1)의 內를 당시의 한자음 '닉'로 읽었는지, 아니면 우리말로 새겨 '안' 정도로 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ㄱ)의 道內와 任內는 이강로(1991: 1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한자어로 굳어져 사용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音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2)와 같이 分財文記에

4) 소괄호 안의 현대어 번역문은 필자가 붙인 것이다. 노명호 外(2000: 上131) 참조.

서 분재 사유를 적은 分財記 본문의 말미에 의례적으로 나타나는 '… 內乙'의 경우엔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말로 새겨 읽었다면 '… 안흘'로 읽혔을 것임이 틀림없다고 본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문증되기 때문이다. (1)과 (2)의 용례처럼 內가 讀字로 쓰인 경우엔 音讀 또는 訓讀 여부에 상관 없이 일단 본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3.2. 동사 어간 표기 '使內-'

(3) 僧人衣服乙良唯只紬絹布匹分使內遣綾羅匹段乙良一亦禁止爲乎矣 <明律12.06ㅎ> (僧人의 衣服은 오직 굵은 베옷만 사용하고 비단옷은 일제 禁止하되)
他人乙用良捉告爲賞錢乙干求爲旀又他人乙陷害得罪令是乎爲使內在乙良 <明律24.06ㅈ> (다른 사람을 써서 [남을] 붙잡고 고발하여 상금을 얻고자 하며, 또 남을 모함하여 罪를 짓도록 [다른 사람을] 부린 경우에는)
分例敎皃如使內白乎旀 <1395년 張寬개국원종공신녹권 199> (구분하여 주신 敎示대로 시행하오며)

위 예문 (3)의 '使內-'는 동사 어간으로서 어말어미 또는 선어말어미와 통합하여 사용되었다. '使內-'는 대체로 '行하다, 처리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부리다, 종사하다, 사용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使內-'는 '브리-'로 읽혔다고 본다. 이것은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문증될 뿐만 아니라, 『吏文襍禮』에서 확인된다. 다른 이두 학습서들에서는 '부리, ᄇᆞ리, 부리' 등으로 그 독음을 적었다. '브리-'는 使를 새겨 읽은 것이므로, 內는 表音하거나 表意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 따라서 內는 아무 의미 없이 덧붙여진 표기 즉, 添記이거나 지정문자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5]

3.3. 文終結 위치에서의 '內'

3.3.1. 使內

(4) 蚕屎乙良頻頻除去蒸熱不冬爲只爲使內齊 <養蚕27ㅎ> (누에 똥은 자주 제거하여 蒸熱하지 않도록 한다.)[6]
必于陳麥是良置此樣以使內乎矣 <農書輯要 15> (비록 썩은 보리이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되)

(5) 上薪之法唯只乾淨溫暖內外良中寒濕之氣無只爲使內. <1415년 養蚕40ㅈ> (上薪하는 방법은 오직 乾淨하고 溫暖하며 안팎에 寒濕한 氣가 없도록 한다.)
春耕乙良天氣和暖爲去沙使內. <農書輯要 10> (봄갈이는 和暖함이 뚜렷해야 행할 것.)

(4)의 使內는 (3)과 마찬가지로 동사 어간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그러나 (5)의 使內는 이와 달리 별도의 어미와 통합하지 않은 채 문종결 위치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엔 단순히 동사 어간 '브리-'에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使內에 문종결어미가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5)의 使內에 대하여 후행하는 어미를 생략한 표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적어도 우리말에서는 동사 어간만으로 문장을 종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內는 (3)과 (4)의 경우와는 달리 어떤 형태 또는 음상을 반영한 표기자임에 틀림없다. 이 표기

5) 이와 관련하여 이강로(1990, 1991)에서는 사동 접미사를 표기하던 '內' 중에서 '爲內-'는 12세기에, '成內-'는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에 소멸되었으나, '使內-'만은 잔존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사동 접미사에 대응한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內의 관습적 표기라는 점에서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이철수(1989: 183)의 번역문을 전재하였음. 이하 養蚕經驗撮要 이두문의 번역은 이에 따른다.

자를 음차자로 규정하여 앞서 논의한 여러 독음들 즉, '누, 느, 너' 중 그 어느 것에 기대어 보아도 합리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5)의 內는 假의 원리에 따른 訓借字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은 문제는 內의 訓 '안'으로 읽혔는지, 아니면 일부 형태를 생략하거나 바꾼 轉用音으로 읽혔는가라는 것이다. 여하튼 使內가 문종결 위치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內의 訓 '안'을 감안해 볼 때, 使內의 마지막 형태소는 동명사 어미일 개연성이 무척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使內는 다음과 같이 형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6) ㄱ. 브리-(동사 어간) + -ㄴ(동명사 어미)
ㄴ. 브리-(동사 어간) + -아/어-(어미) + -ㄴ(동명사 어미)

3.3.2. 爲內

위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해 볼 대상은 고려 중엽 이후에서 조선조 초기에 걸쳐 시행된 准戶口의 첫머리 부분에 사용되던 이두문이다. 이 시기의 준호구 원문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족보 등에 등재되어 전하는 것들 일부를 참조하면 문서 양식과 그 문투를 추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7) ㄱ. ① 部上楊堤壹里癸酉年戶口良中獨女沃溝郡夫人宋氏乙准爲內教 <1393년 *崔珙妻宋氏准戶口> (部에 보관 중인 楊堤1里 癸酉年(1393년) 戶口에서 獨女 沃溝郡 夫人 宋氏를 准하라는 敎임.)
② 部上洪道六里壬子年戶口良中檢校大護軍朴得賢乙準爲內教 <1372년 *朴得賢准戶口>
③ 部上星化一里辛卯戶口良中戶奉翊大夫……鄭仁卿乙准爲內

敎 <1292년 *鄭仁卿准戶口>

ㄴ. 司上丙申年鍊立後三品政案第十七冊良中顯大夫知春州兼勸農防禦使李子脩乙準爲內勅 <1366년 *李子脩政案 2-3> (司에서 보관 중인 丙申年(1356년)에 鍊立한 後의 3品 政案 第17冊에서 中顯大夫 知春州事 兼勸農防禦使 李子脩를 準하라는 勅임.)[7]

(7ㄱ①)은 開城府 東部에서 崔珙의 妻 宋氏에게 내준 준호구 즉, 일종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문서의 첫머리에 적힌 이두문이다. 이것을 (7ㄱ②) 및 (7ㄱ③)과 대비해 보면 양식과 문투에 차이가 없으므로, 그 이전 왕조에서 시행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8] (7ㄴ)은 典理司에서 李子脩에게 政案에서 准한 내용을 발급해 준 것으로서, (7ㄱ)과 대비해 볼 때 마지막 자 '勅'만이 다를 뿐 양식과 문투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 준다.

(7ㄴ)의 마지막 문구 '…準爲內勅'은 (7ㄱ)의 '…准爲內敎'와 정확히 대응된다. 이 경우의 '勅'은 이두자로 보기 어렵다.[9] 이와 대응하는 '敎' 역시 吏讀字가 아니라 漢字語로서 임금의 敎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0] 이것은 高麗初의 慈寂禪師凌雲塔碑陰銘(941년)에

7) 현대어 번역문은 노명호 외(2000: 上89)를 참조하였음.

8) '准'과 '準'에서 차이가 있는데, 원문서가 아닌 까닭에 속단하기 어렵긴 하나, '准'이 올바른 자가 아닌가 싶다. 조선조 후기에 지방 관아에서 발급한 준호구에서 '準' 자를 사용한 것들이 있긴 하다.

9) 이태 전에 朴宰佑 선생(현재 목원대 교수)과 나눈 담화에서 공감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감사를 드린다.

10) 다만, 이 '敎' 자가 이두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吏讀字로 처리함이 좋다고 본다. 조선초의 공신녹권들에서는 임금의 '王旨'를 전재한 다음에 '…敎是齊'로 일단 문장을 끊는 형식을 취한다. 이 경우의 '敎是齊'는 '敎이다.'로 풀이하기보다는 동사로 해석하여 '하시다.'로 풀이하거나, 동사의 명사형에 계사와 문종결어미가 덧붙은 것으로 파악하여 '하심이다.'로 해석하는 편이 더

서 임금의 敎旨를 전재한 부분에서 '……使賜爲' 다음에 마지막 '敎' 자와의 사이를 넓게 띄운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7)에서 勅과 敎의 앞부분 '…准爲內'은 문종결 형식이거나 관형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투가 수행하는 역할은 일종의 명령 기능인데, 이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11] (8ㄱ)은 (7ㄱ①)에 이어지는 문장이고, (8ㄴ)은 (7ㄴ)에 이어지는 문장이다.

(8) ㄱ. 洪武二十六年正月日東部上楊堤壹里癸酉年戶口準
ㄴ. 至正二十六年月日 丙申年鍊立後三品政案第十七冊準中顯大夫知春州事兼勸農防禦使李子脩

3.3.3. -是內

(9) 稅捧上喫持是內敎 <1392년 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 5> (稅를 받아 지녀 먹을 것'이라 하심[이다].)

(9)는 조선의 太祖가 맏아들인 芳雨에게 土地를 賜給하면서 작성한 문서의 分財記 본문 말미 부분이다. '喫持是內'의 '是'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是'는 '爲'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두에서 계사 是-와 동사 爲-는 서로 넘나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양자 중 어느 것을 쓰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先行字 '持'를 우리말로 새겨 읽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른다면 是는 동사 '디니-'의 말음첨기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위

나을 것이다. 朴盛鍾(1993: 10) 및 朴盛鍾(2006: 51) 참조.

11) 따라서 예문 (7ㄱ①)과 (7ㄴ)의 현대문 끝부분은 원래의 문법적 기능을 감안하자면 각각 "'准할 것'이라는 敎示임."과 "'準할 것'이라는 勅임."으로 바꿀 수 있다. 예문 (8)은 '…… 准함.'으로 끝맺는 문장으로 해석된다.

현대어 번역문에서 "……먹을 것'이라 하심[이다]"는 문서 첫머리에 쓰인 '賜' 자의 문맥적 의미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면 "……먹을 것'이라는 敎示임." 정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7ㄱ)의 '…爲內敎'와 정확히 일치하는 통사구조를 보인다.

3.3.4. 借字 '內'에 대한 가설

'…使內'와 '…爲內' 및 '…是內' 등과 관련하여 고찰할 대상은 15세기 이두문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명령문 형식이다.

(10) ㄱ. 後所生幷以子孫傳持永永使用爲良如敎 <1443년 李澄石賜牌 8-9> (後所生과 아울러 子孫에게 傳하여 지녀 永久히 使用하여라.'고 하심[이다].)

ㄴ. 爲等如褒賞令是良如敎是齊 <1395년 李和개국공신녹권 76> (모두 褒賞시키어라' 하심이다.)

ㄷ. 下內需司爲良如敎等用良<1481년 上院寺成化十七年內需司立案 11-12> (內需司에 하달하여라' 하신 바로써)

위 (10)에 쓰인 이두 어미 '-良如'는 모두 명령형 어미이다. (10ㄱ)의 '爲良如敎'는 앞서 언급한 (7ㄱ)의 '爲內敎'와 동일한 문맥적 환경에서 사용된 것이다. 양자를 대비해 보면 문투가 점차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爲良如敎'는 '爲內敎'의 대체형이라 할 만하다. 16세기 고문서 이두문에서도 '-良如'라는 명령형은 때때로 발견되지만, 명령 기능을 수행하는 '爲內'의 형태는 찾기 힘든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0)의 '爲良如'는 15세기 한글 문헌에서의 'ᄒᆞ야라'에 대응되는 형태이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의 ᄒᆞ라체 명령형 어미는 '-라'이고, 그 앞에 확인법이나 감동법 선어말어미를 취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고영근

1997). 그러나 15세기 이두문에서 이와 같이 '爲良如'라는 형태를 쉽게 발견한다는 사실은 그 이전 시기에 적어도 타동성을 지닌 동사의 ᄒᆞ라체 명령형은 확인법 선어말어미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소[12]와 명령형 어미가 결합된 명령법이 오히려 일반적이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11) ① 麗末鮮初의 이두문에서 이따금 발견되는 문종결 형태 '…使內' 또는 '…爲內'는 명사문의 존재를 시사해 주는 용법으로서, 매우 이른 시기로부터 존속되어 온 것이다.

② 이 경우의 차자표기자 內는 단순한 添記 또는 指定文字가 아니고 音借字도 아니므로 '안'과 유사한 音相을 표기하는 訓假字이다.

③ '內'는 두 개의 문법형태소 즉, 확인법 선어말어미와 유사한 형태소와 동명사 어미 '-ㄴ'이 통합된 형태를 표기하기 위해 채용된 借字이다.

3.4. 기타 용법으로서의 '內'

3.4.1. 爲白內等

고려말과 조선조 초기의 이두자 內로 표기된 것들 중에는 비록 그 수효는 많지 않지만 앞선 논의들과는 양상을 조금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12) 필자는 현재 확인법 선어말어미로 생각하고 있으나, 당대의 서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이므로 자세한 논의는 유보해 둔다.

(12) 右伏准爲白內等民矣徒段道丞主敎是病以…… <1439년 *慶尙監營呈狀 1> (금번에 伏准하옵는 것은 백성인 우리들은 道丞主께서 病으로 ……)

(12)는 백성들이 경상도 都觀察黜陟使에게 올리는 문서의 첫머리이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관아에 올리는 청원서에 해당하는 所志의 첫머리는 '右謹言所志…'로 시작하는데, 이 뒤를 이어 청원인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뒤따른다. 대개의 경우 청원인 본인을 지칭하는 이두의 1인칭 대명사 矣[13]가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右謹言所志矣段…'으로 시작하는 문투가 거의 대부분이다. 청원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엔 복수접미사를 덧붙여 '右謹言所志矣徒段…'으로 표현하게 된다. 청원인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을 경우엔 신분을 일컫는 보통명사를 앞세우게 된다. 이에 따라, 여자인 경우엔 '右謹言所志女矣段…'이 되고, 노비인 경우엔 '右謹言所志奴矣段…', 僧人의 경우엔 '右謹言所志僧矣段…', 신하인 경우엔 '右謹言所志臣矣段…'이 된다.

그런데, 所志의 첫머리에 놓이는 '右謹言所志…' 대신에 (12)에서는 '右伏准爲白內等…'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官衙의 公人으로 모시던 이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를 경상도 都觀察黜陟使에게 올리는 일종의 呈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딱히 所志라 할 수 없었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伏准이라는 문서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엎드려 바라옵건대' 정도의 의미를 지닌 문구를 첫머리에 쓰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투로 추정된다. 1439년은 훈민정음 창제 직전이므로, '爲白內等'을 훈민정음 직후의 한글 표기로 한다면 'ᄒᆞᅀᆞᄫᆞᆫ'에 해당할 것이다. 'ᄒᆞᅀᆞᄫᆞᆫ'을 형태 분석하면 'ᄒᆞ-(동사 어간) + -ᅀᆞᆸ-(선어말어미) + -(ᄋᆞ/으)ㄴ(관형형 어미)

13) 이두에서 矣가 1인칭 대명사로 쓰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朴盛鍾(1996: 171-174) 참조.

ᄃᆞ(의존명사) + -온/은(주제화)'이 된다. 이것은 일반 言衆의 형태 및 분절 의식 속에서는 'ᄒᆞ+ᅀᆞᆸ+온+ᄃᆞᆫ'으로 인식된다고 상정할 때, 이 인식형태에 따라 이두로 적은 것이 바로 이 '爲白內等'이라고 추정된다. 결국 차자표기자 內는 '온'을 표음하기 위해 음상이 유사한 '안'으로 읽히는 훈가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14]

'右○○爲白內等…'과 같은 문투는 16세기의 所志에서 때때로 발견된다. 대개의 경우 '右所陳爲白內等…'으로 굳어져 사용되었는데, 1507년의 용례[15]가 현재로서는 처음인 듯하다. 16세기말에 이르면 '右謹陳爲白內等…'으로 표현하거나, 아예 所志라는 단어를 넣어 '右所志爲白內等…'으로 표현한 경우도 발견된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上典을 대신하여 戶奴가 所志를 올리거나, 私奴들이 청원인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3.4.2. 爲白內旀

爲白內等과 겉으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용법도 눈에 띈다.

(13) 日夜懸戀懸戀爲白內旀 <1468년 金宗直妻曺氏簡札 4> (밤낮으로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사오며)

金宗直의 妻 曺氏가 남편인 金宗直에게 보내 簡札은 한문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두문에 쓰이는 한자어 및 이두토가 군데군데 섞여

14) 爲白內等은 후대 이두 학습서들에서 ᄒᆞᄉᆞᆯ걸든·ᄒᆞᄉᆞᆯ아든·ᄒᆞᄉᆞᆯ너든 등과 같이 內에 대하여 매우 혼란된 독법을 보여 준다. 독법의 혼란은 곧 어원 및 기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면이 있다고 본다.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32 慶州 慶州孫氏篇, 257 참조.

나타난다. (13)의 '爲白內旀'가 그 중의 한 예인데, 內가 쓰인 점이 미심쩍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의 이두 표기 관행에 따른다면 內는 동사 使內-와 같이 관습적 표기에 따른 不讀字이거나 대표음 '안'으로 읽히는 훈차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 문맥에서 상정할 수 있는 당대의 국어 'ᄒᆞᄉᆞ보며' 또는 'ᄒᆞᄉᆞ오며'를 적은 것이라면, 爲白乎旀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爲白乎旀는 실제 용례가 확인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爲白內旀는 후대의 자료들에서도 그 용례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誤記이거나, 讀音의 관점에서 白과 旀의 직접적인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개입된 調母音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16]

3.4.3. -內臥-

麗末鮮初 시기의 차자표기자 '內'의 용례들 중에는 앞선 시기의 표기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일부 발견된다.

(14) ㄱ. 准受向教是事望白內臥乎事是亦在 <1435년 張安良潭陽都護府所志 7> (확인하여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일이 있음.)[17]
立案成給向教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 <1461년 河源所志 6> (立案을 成給하여 주실 일을 바라는 일이 있음.)

ㄴ. 官上爲有臥田出還給明決向教是事乙良告爲白內臥[18]事是亦在 <1385년 張戩所志 14-15> (官上한 田出의 還給을 명쾌히 판

16) 필자는 현재 후자의 해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朴盛鍾(2006: 829) 참조.
17) '…… 일이 있음'은 '……事是亦在'에 대한 직역이므로, 문맥만을 고려한다면 '…… 일임'으로 번역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18) 臥 자 뒤에 흔히 표기되는 乎 자를 생략한 표기이므로 보충해 읽어야 한다. 앞부분의 官上爲有臥田出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 처분하시기를 告하는 일이 있음.)

(14)의 望(良)白內臥乎 중 '-內臥-'는 흔히 중복 표기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른 시기의 표기 관습이 잔존한 데에다가, 새로운 어법을 반영하는 표기자가 겹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의 內는 아무런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 부여 역할을 갖지 못한다. '-內臥-'에서 오직 臥만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內를 덧붙이는 표기법은 앞서 언급한, 문종결의 기능을 하는 使內 및 爲內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목되는 사실은 15세기말까지의 조선 초기 이두문에서 '-內臥-'는 7개의 용례가 발견되는데, 이들이 모두 동사 '望(良)-' 즉, '바라다'에 국한되어 쓰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동사 使內-와 거의 동일한 과정을 겪은 관습적 표기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사 어간 표기자 使만으로도 표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使內-만이 內를 덧붙여 쓰게 된 관습은 가설 (11-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使內의 마지막 형태소는 동명사 어미로서 명사문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써 문종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관아에서 주고 받은 공문서 중 下達文書의 말미와,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지시를 담은 글의 끄트머리에서는 使內 또는 爲內로써 끝맺는 문투를 설정할 수 있다. 양자 모두 '…(행)할 것.' 또는 '…(행)하는 것임.'이라는 의미를 수반하여 명령이나 지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중 爲內는 (7)에서 보았듯이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의 준호구 등에서 확인된다. 使內의 경우엔 조선초의 養蚕經驗撮要와 農書輯要의 이두문과, 다음 節에서 보듯 신라 시대의 목간에서 그 존재의 편린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말미암아 동사 使-의 경우엔 동명사 어미의 명사적 용법을 상실한 이후에도 여전히 內를 덧붙여 표기하게 된 것이라 이해된다.

문종결 형태 使內와 정반대의 환경에서 사용된 상대적인 것이 바로 望(良)白內[19]이라 할 수 있다. 청원인이 관아에 올리는 所志와 같은 문서들, 그리고 웃사람에게 무언가를 청하는 내용을 담은 글의 말미에는 '… 바라는 일임.' 또는 '… 바라는 것임.' 정도의 문투가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달문서 또는 아랫사람에게 주는 글이라면 望(良)內만으로도 충분할 터이지만, 上達문서와 청원 문서 또는 웃사람에게 주는 글에서는 당연히 경어법 형태가 개입되어 望(良)白內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望良白內臥-는 望良白內의 명사적 용법이 소멸한 이후에도 여기에 중세국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ᄂᆞ-'와 유사한 형태소와 결합할 경우엔 臥를 덧붙여 표기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마치 使內의 명사적 용법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브리다'를 표기할 때엔 오랜 관습으로 말미암아 使內-로써 동사 어간을 표기하게 된 것과 同軌라 하겠다. 이에 따라 所志類의 본문 말미에서는 조선조 후기까지 여전히 (14)에서와 같이 '望良白內臥乎事…'라는 상투적 문구로 남게 되었다고 본다.

3.4.4. 審是白內-

조선조 초기의 이두자 內 중에는 誤記의 관습으로 인한 표기법으로 처리해야 할 용례들도 존재한다. 다음의 (15)에 나타나는 內가 이에 해당한다.

(15) 王旨內思審是白內乎矣 <1392년 李和錄券 49> (王旨 안의 뜻을 살피옵건대)

19) 동사 '望'의 경우엔 '使'와 달리 말음첨기자 良을 덧붙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望良白內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나, 양자의 대비 편의상 望(良)白內로 표시한다.

조선조 초기의 개국공신들에 대한 녹권에서 임금의 교시 즉, '王旨'를 전재한 다음에 그에 의거하여 功績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첫머리는 흔히 위 (15)와 같이 시작된다. 이 경우 '살피다'에 해당하는 동사 審是-의 활용형에서 경어법의 선어말어미 -白- 뒤에 예외없이 內 자로 적고 있다. 이것을 앞서 살펴 본 望良白內臥乎事과 대비해 보면 그 이전 시기에는 審是白內臥乎로 쓰였을 터이고, -內臥-에서 어느 하나를 탈락시킨다손 치더라도 당대의 어법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內를 탈락시킬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추측된다. 金武林(2003: 139)에서 "10세기 초반은 '內'가 '臥'로 교체되어 가는 과정의 막바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견해를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審是-의 경우 오히려 그 반대로 臥를 버리고 內로 적는 표기 관행이 굳어진 것인지 현재로서는 규명하기 어렵다.

4. 月城垓字木簡 제149호에서의 '使內'

4.1. 判讀과 해석

비록 후대에 드문드문 발견되는 용법이지만, 麗末鮮初 이두문에서 '-內'로 끝맺는 문장 형식을 감지하고 이를 통해 (11-①)의 가설 즉, 매우 이른 시기의 명사문 문종결 방식의 존재를 설정해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月城垓字木簡 제149호[20]에 적힌 문장은 매우 주목된다. '使內'로써 문장을 끝맺고 있기 때문이다. 목간 각 面의 순서는 윤선태(2005)에 따르고, 이용현(2006: 77-80)을 참조하여 판독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韓國의 古代木簡』(2004년)을 발간하면서 붙인 일련번호로서, 月城垓字 출토 목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엔 제2호가 된다.

(16) 大鳥知郎足下万引白ㅣ <1면>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수 <2면>
牒垂賜敎在之 後事者命盡 <3면>
使內 <4면>

月城垓字木簡 제149호는 下限年代를 7세기로 볼 만큼 오래된 것이다. 이것은 大鳥知郎에게 万引[21]이 무언가를 말하는 서간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제1면을 도외시한 나머지 면에 적힌 내용은 문서의 본문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서 요건 중의 하나인 발급 시점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 다소 흠이지만, 이는 木簡의 재료 특성에 따른 변용 또는 附箋紙나 甘結 등의 존재를 감안하자면 내용의 대강만을 전하는 목간문서 고유의 양식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서간문 형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종이에 써서 전하는 일반적인 서간문 양식과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논의는 後日로 미루고 제3면과 제4면의 문구를 필자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牒을 내려 下賜하라는 敎示가 있(었)다. 나머지 일은 (王)命대로 다 행할 것.

따라서 제3면의 문구는 漢文에서 虛詞로 쓰이는 '之'와 '者'만을 빼고는 모두 우리말 어순에 따라 대응하는 漢字들을 늘어 놓은 것이 된다. 이것은 初期吏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위 목간은 늦어도 7세기 이전의 것[22]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신라 이두 자료로 판

21) 万引의 引 자는 行으로 볼 소지가 많으나, 앞선 연구자들의 판독을 중시하여 그대로 둔다.
22) 윤선태(2005)에서는 6~7세기로 시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에 따른다.

단된다. 제4면의 마지막 문구 '使內'는 조선 초기의 養蚕經驗撮要와 農書輯要의 이두문에서 문종결 위치에 쓰인 그것과 꼭 일치하며, 麗末鮮初 시기 준호구의 '爲內'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위 이두문의 마지막 문구 '使內'의 內를 음차자로 읽으면 해독이 미궁에 빠진다. 따라서 이것은 훈차자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金永旭(2007: 162)은 이 '使內'를 '시킨 대로 처리함'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해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안'으로 읽었을 뿐만 아니라, 문종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곡을 찌른 것으로 본다.

4.2. 讀音과 관련하여

7세기 이전 시기의 이두문에 쓰인 借字表記字 '內'를 훈가자로 보고 15세기의 어형 '않'에 기대어 새겨 읽는 데 대한 몇 가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使內의 內 자는 동명사 어미 '-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문종결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마지막에 쓰인 동명사 어미 뒤에 어떤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맨 마지막에 붙는 이 요소는 비록 형태소로서의 자립적인 기능은 없다 하더라도 음성적 실체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쩌면 일종의 초분절음소로서 억양과도 같은 기능을 가졌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內는 '*안, *않, *앉' 중의 어느 것인가를 표기하기 위해 채용된 借字일 개연성이 있다. 필자로서는 15세기의 어형과 시간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 중 '*안'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둘째, 동명사 어미 앞에 어떤 형태소가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만약, 그러한 형태소가 없었다면 위 使內는 '브린'으로 읽어도 충분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의 논의에서 말했듯이 이 경우엔 동명사 어미 앞에 확인법의 선어말어미와 유사한 형태소가 선행되었다고 판단한다. 문종결 위치에 쓰인 使內와 爲內, 그리고 아직 문증되지 않은 望良白內에서 이들 동사가 모두 타동성을 지녔다는 점, 그리고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하달문서의 말미에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틀림없이, 확실히' 정도의 의미 기능을 갖는 형태소와 통합하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행 어미 없이 동명사 어미만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였다면 굳이 훈차자를 쓸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참고된다. 따라서 본고는 (11-③)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인법 선어말어미와 유사한 형태소와 동명사 어미 '-ㄴ'이 통합된 형태를 표기하기 위해 채용된 字가 內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頭音이 母音으로 시작하지 않고 子音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이것은 동명사 어미에 선행하는 형태소의 음가와 관련을 맺는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알타이 諸語에서 '內'의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자음을 頭音으로 갖지 않는다는 사실[23]을 근거로 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하나 좀더 숙고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5. 마무리

借字表記字 '內'의 독법과 문법적 기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아직 定說로 인정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의 대강을 훑어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본고는 이를 위해 먼저 麗末鮮初의 이두문에 사용된 '內'의 용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한 용법은 養

23) Ramstedt(1949)를 참조하였음.

蚕經驗撮要와 農書輯要의 이두문에서 문종결 위치에 쓰인 '使內', 그리고 准戶口의 첫머리에 기재된 문장 끝에 붙는 '爲內敎' 중의 '爲內'의 용법이다. 이들은 모두 문종결의 위치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용법은 매우 이른 시기로부터 존속되어 온 것으로서 명사문의 존재를 시사해 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경우의 '內'는 확인법 선어말 어미와 유사한 형태소와 동명사 어미 '-ㄴ'이 통합된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보았다. 최근에 발굴 소개된 月城垓字木簡 제149호에 적힌 문구 맨 마지막의 '使內'는 이러한 가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麗末鮮初 시기와 7세기 이전의 이두에 사용된 借字 '內'는 '안' 정도로 읽히는 訓假字로 규명하였다.

본고에서의 논지가 신라와 고려 시대의 이두 자료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지, 그리고 시기별로 용법상의 차이나 독법 및 문법적 기능의 변천이 있었는지의 문제는 後稿로 미룬다.

참고문헌

고영근(199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고정의(2003), 「이두 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口訣硏究』 10, 구결학회, 223-252.

國立慶州博物館(2002), 『文字로 본 新羅』.

金武林(2003), 「漢字 '內'의 國語 音韻史的 考察」, 『國語學』 41, 국어학회, 123-143.

金永旭(2007),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에 대하여」,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2007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57-166.

南豊鉉(2000), 『吏讀硏究』, 태학사.

노명호 外(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朴盛鍾(1993), 「李和 開國功臣錄券의 吏讀와 그 解讀」, 『古文書硏究』 4, 고문서학회, 1-32.

朴盛鍾(1996),『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朴盛鍾(2005),「16세기 古文書 吏讀의 종합적 연구」,『省谷論叢』36, 省谷學術文化財團, 49-107.
朴盛鍾(2006),『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진호(1998),「고대 국어 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法制處(1964),『大明律直解』, 法制資料誌 13輯.
徐鍾學(1995),『吏讀의 歷史的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74-178.
梁柱東(1942/1946),『朝鮮古歌硏究』, 博文書館.
윤선태(2005),「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역사와 현실』56, 113-142.
이강로(1989ㄱ),「차자표기에 쓰인 '內'字에 대한 연구(1)」,『한글』203, 한글학회, 7-24.
이강로(1989ㄴ),「차자표기에 쓰인 內/[예]에 대한 연구(2)」,『한글』205, 한글학회, 19-51.
이강로(1990),「대명률직해 이두의 하임법 사내(使內)의 연구」,『동방학지』6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269.
이강로(1991),「차자 표기에 쓰인 '內/예'에 대한 연구(3)」,『한글』211, 한글학회, 5-44.
李基白 編(1987/1993),『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일지사.
李丞宰(1992ㄱ),『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李丞宰(1992ㄴ),「農書輯要의 吏讀」,『震檀學報』74, 진단학회.
이승재(1998),「고대 국어 형태」,『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
이용현(2006),『韓國木簡基礎硏究』, 신서원.
李喆洙(1989),『養蠶經驗撮要의 吏讀硏究』, 인하대학교 출판부.
정재영(2000),「고대국어 선어말어미 '-ᄂᆞ-'와 그 변화,『형태론』2-1, 박이정, 73-106.

金澤庄三郎(1918),「吏讀の硏究」,『朝鮮彙報』4月號, 71-99.
白鳥庫吉(1901),「再び朝鮮の古語に就いて」,『言語學雜誌』2-1, 13-32.

小倉進平(1929), 『鄕歌及び吏讀の硏究』, 京城帝國大學.
鮎具房之進(1931), 『雜攷』 第1輯,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22.

Ramstedt(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y: Suomalais-Ugrilainen Seura.

〔210-701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 관동대학교 미디어문학과〕
E-mail: psjpsj-2@hanmail.net
접수일자: 2007. 05. 28.
게재결정: 2007. 07. 27.

On the decipherment of '內' in *Idu*(吏讀) scripts

Park, Seong-jong

It has been one of the difficult subjects that what the letter '內' can be read in *Idu* sentenc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looked into many usages of *Idu* sentences including '內' from the period of late *Goryeo* dynasty and to the period of early *Joseon* dynasty.

Among the usages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ones are '使內' and '爲內' which were used to bear the role of closing a sentence. Some examples of the former were found in literatures, 養蚕經驗撮要 and 農書輯要. And the latter examples were found in the old documents 准戶口 of those times. The usages of '使內' and '爲內' located at the last boundary of a sentence seem to have been handed down from the early old times. It is presumed that '內' included one of the prefinal endings which work for ascertaining an event or a proposition and the deverval ending '-n' which works for forming noun phrase like gerund in English.

Fortunately, we found one example of the usage '使內' written at the end of a paragraph. It was written on the face of a wooden slice which comprised four sides. And the wooden slice

seems to date back to the 6th century or the 7th century.

So, it has come to be proved that the *Idu* script '內' was read '안', the Korean word corresponding to Chinese letter concerned, at least at the period before the 7th century and around the 14th century and the 15th century.

Key words: '內' in *Idu* scripts, 使內, 爲內, -是內, 養蠶經驗撮要, 農書輯要, deverbal ending '-n'